

유럽 PL제도의 맹아와 발전 (하)

글 · 노연구 회장 기(氣) NARA CORP.

< 목 차 >

1. 제조물책임의 법리
2. EC지침의 성립현황과 기맹국의 입법추진
3. EC지침에 의거한 통일화의 이유
4. EC지침
5. EC지침의 내용
6. 기타 유럽국가들
7. 끝을 맺으며

5. EC지침의 내용

1) 무과실책임의 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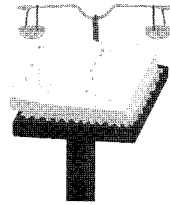
미국의 엄격책임과 거의 동일한 법적 책임개념인 무과실책임의 채용을 제1조에서 언급하고 있다. 그 근거로 전문에서 위험책임의 원칙과 손실분산의 방법을 의중에 두고 있다. 물론 EC지침도 결함의 존재가 전제가 되며, 결함의 판단은 <소비자의 통상 기대기준>을 채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품의 표시, 합리적으로 예견이 가능한 제품의 용도, 제품이 유통에 놓여진 방식 등의 제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사고발생후의 제품의 개선 혹은 개량이나 제품의 회수를 촉진할 정책적 취지에서 사고후에 제조자가 취한 설계변경, 경고의 추가, 제품의 회수 등 사고발생후의 개선 및 회수의 증거는 결함의 존재에 대한 증거로서 채택이 불가능하게 규정되어 있다.

미국에서의 기술수준의 항변과 유사한 개발위험의 항변은 각 국의 옵션사항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는 제품이 유통에 놓여진 시기의 과학이나 기술수준으로는 도저히 제품의 결함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었던 것을 제조자가 입증하였을 경우에는 면책을 일단 허용하고 있다.

2) 선의와 무과실

선의는 법률상 어떠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도덕적인 의미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선의의 제3자나 선의의 점유자와 같은 것이다. 무과실은 과실 즉 주의의무위반이 없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민법상 선의와 함께 쓰이며, 선의인 것에 관해 과실이 없는 것을 가리킨다. "선의이며 과실없이"와 같은 것이다. 물건의 점유에 관하여서는 점



유자의 선의는 추정되지만, 그러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아니한다.

3) 무과실책임

손해의 발생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 과실책임에 대비(對比)된다. 계약책임에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주로 논의되고 있다.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무과실책임은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점에 책임 귀속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법익 침해라고 하는 결과의 발생에 원인을 주었다는 점에 그 근거를 둔다는 의미에서 원인책임주의라고도 칭한다. 따라서 법의 비난이 과실에 향하지 않고 결과에 향하여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결과책임주의라고도 한다.

“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고 하는 과실책임주의는 자본주의적 자유주의를 그 이념으로 하는 근대시민법의 대원칙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기업은 한쪽에 있어서는 거액의 이익을 얻음과 동시에, 다른 한쪽에 있어서는 기업내의 근로자 및 일반인에 대하여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울러 현대 사회생활의 복잡화와 더불어 종래의 과실책임주의로서는 피해자의 보호를 충분히 시행하지 못하고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무과실책임의 이론이 진전을 보게 된 것이다.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로서는, 위험한 시설의 소유자는 그것에 의하여 생기는 손해에

대하여서 절대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위험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또 큰 이익이 들어가는 데에 손실까지도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하는 보상책임론이 있으며, 손해의 원인을 준 자에게 그 배상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하는 원인책임주의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배상책임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주장하는 논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는 구체적 공평주의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에 있어서는, 공작물소유자의 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8조는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전형적인 예이다. 그리고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의 책임, 사용자의 책임,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은 상대적 무과실책임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예들은 진정한 무과실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상법에서도 선박소유자의 책임이나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등을 무과실책임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역시 예외적인 규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특별법은 근대적 대기업의 위험성이나 보장성을 고려하여 근로자 재해보상제도 그리고 광해(鑛害)배상제도와 국가배상법상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에 대한 배상책임 등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예가 점차 많아져 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4) 제조물의 범위

EC지침의 대상이 되는 제조물은 동산에 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은 제외되었다. 즉 제일차농산물과 수렵물을 제외한 모든 동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동산이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에 편입되어 있을 때는 제조물의 범위안에 포함된다.

5)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도 사망 또는 신체장해 및 개인적 사용에 이용된 재산으로 한정되며 그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은 EC지침의 대상의 범위로서 제외함으로써 각국의 국내법에 신축성있게 위임되었다. 이 경우의 재산은 500ECU까지는 자기부담으로 공제된다. 그리고 인체의 손해에 대하여서는 대량으로 동종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이 팽대하게 된다. 그래서 제조업자에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책임한도액을 설정함에 있어서 옵션사항으로 유보되어 각국에 위임하였다.

6) 인과관계

인과관계(因果關係)란 일정한 선행사실이 없었더라면 다른 일정한 후행사실도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상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논할 경우와 형법상 구성요건이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요구하고 있는 결과범에 대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청원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의 입증에 필요하다. 즉 제조물의 결함이 유통한 시점에 존재하였고 그 결함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러한 입증에 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다. 그리하여 인과관계의 곤란함을 예상하여 증명책임보다 일층 완화된 증명점감의 가능성을 제시해 놓고 있다.

7) 책임주체

책임주의(責任主義)란 “책임 없으면 형벌없다”는 원리를 기초로 책임 없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고 형량도 책임의 대소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책임의 범위내로 형벌권을 한정함으로써 국가의 형벌권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광범위한 책임주체를 인정하고 있으며 완성품 및 부품의 제조업자이외에 제조자로서 표시를 한 자, 수입업자, 유통업자도 책임주체가 된다. 특히 유통업자는 제조업자를 인지할 수 없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인 책임주체가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8)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배상책임주체가 제조물책임으로부터 면책될 수 있는 사유를 개별조항으로 묶어서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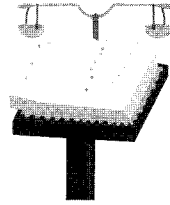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유통시키지 않은 제조물일 때,

전후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에서는 손해를 발생시킬만한 결함이 존재하지 않았던지 또는 결함이 유통 후에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을 때,

제조업자가 그 제품을 영업용의 판매 등의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제조하거나 또는 유통시킨 것이 아닌 제조물일 때,

결함이 공공기관의 강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있는 경우일 때,

제품이 유통에 놓여진 시점에서 그 당시의 과학이나 기술수준에서 제조업자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을 경우일 때,



부품 제조업자에 대하여서는 그 결함이 제품의 구조 또는 제품의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서 발생한 결과에 기인할 경우일 때.

9) 책임주체가 복수일 경우

EC지침에 근거하여 복수의 책임주체가 존재할 경우에는 각각의 책임주체는 연대책임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구상권의 행사에 대하여서는 각국의 국내법에 의해 신축성 있게 적용하여 해결한다.

10) 책임기간

모든 시효에 관해서 원고는 손해와 결함 및 제조업자를 인지하였거나 인지한 때로부터 3년 이내, 그리고 유통에 놓여진 시점부터는 10년으로 3년의 소멸시효에 대한 중단 혹은 중지의 사유는 각국의 국내법에 따른다. 그리고 이러한 10년의 시효는 제척기간으로 간주한다.

6. 기타 유럽국가들

EC와 같은 대륙을 형성하고 있고 또 그 역내에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은 국가간 교역상의 장벽을 제거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그래서 당초 1993년 1월 1일에 EC EFTA에 가맹한 19개국으로 구성되는 유럽경제영역(European Economic Area : EEA)조약을 발효하기로 예정하였다.

또한 EFTA의 대부분의 가맹국이 EC에 가맹을 신청하고 있었던 당시 사정의 영향으로 EC지침을 기초로 한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이 순

조롭게 진행되어 1993년 6월까지 모두 완료하였다.

7. 끝을 맺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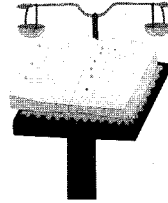
구주의 각국 정부는 물론 기업이나 소비자들도 제조물책임법이 그들의 관념과 실정에 맞게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기업은 제조물책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제품의 안전성과 내구성 진작에 힘썼음은 물론이다. 항상 제품의 편의성을 염두에 두고 또 소비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조물을 설계하고 제조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

우리나라도 이제 PL시대에 성큼 들어와 있다. 정성과 최선을 다하지 않고 막연히 제도의 시행에 대한 걱정이나 불만을 토로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는 또 현대의 우리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받드는 그러한 기업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시대적 요청으로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적 사항이다.

또한 소비자도 제조물책임법의 본래의 정신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사고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용수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항상 안전성을 확인하며 정성있는 자세로 제조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작금에 지나친 기대나 터무니없는 욕심을 품어서는 아니된다.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는 일에 소비자도 동참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사용자의 지나친 부주의와 턱없는 요용이나 남용 그리고 악용까지 제조물책임법이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어느나라에서나 공통된 사항이다.

정부는 제조물책임법이 제대로 정착되어 소비자의 권익이 신장됨은 물론 기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민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기타 보완제도의 준비를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제조물의 안전과 관련된 수많은 기타 법령을 정비하고 분쟁해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에 지속적인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와의 교역이 많은 유럽의 PL법의 특징을 특별히 살펴본 것이다. 우리보다 선진국이며 우방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각 나라마다 그 나라 특유의 토양과 습속에 따라 특징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유럽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앞으로도 유럽국가의 PL의 흐름을 예의 주시하며 분석하여야 하며 또 소화해서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우리의 PL법도 따라서 변화하는 시대에 호응하여 접목하여 발전시켜 나가는데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Ⅵ. 미국의 <Second Restatement>

TOPIC 5. STRICT LIABILITY

402 A. Special Liability of Seller of Product for Physical Harm to User or Consumer

- (1) One who sells any product in a defective condition unreasonably dangerous to the user or consumer or

to his property is subject to liability for physical harm thereby caused to the ultimate user or consumer, or to his property, if

- (a) the seller is engaged in the business of selling such a product, and
 - (b) it is expected to and does reach the user or consumer without substantial change in the condition in which it is sold.
- (2) The rule stated in Subsection (1) applies although
- (a) the seller has exercised all possible care in the preparation and sale of his product, and
 - (b) the user or consumer has not bought the product from or entered into any contractual relation with the seller.

403 B. Misrepresentation by Seller of Chattels to Consumer One engaged in the business of selling chattels who, by advertising, labels, or otherwise, makes to the public an misrepresentation of a material fact concerning the character or quality of a chattel sold by him is subject to liability for physical harm to a consumer of the chattel caused by justifiable reliance upon the misrepresentation, even though

- (a) it is not made fraudulently or negligently, and
- (b) the consumer has not bought the chattel from or entered into any contractual relation with the seller.